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256호

「금융위원회 감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위해 마련된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19.3.1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5.14, 감사원)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개선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신설하고, 아울러 그간 금융위원회의 자체감사 근거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감사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및 운영절차 개선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유도

① (면책기준 완화) 자체감사 면책기준 간소화 및 중대한 절차상 하

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토록 요건을 완화
등(규정안 제19조)

- ‘결과발생’ 요건을 삭제하여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에 통합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면책할 수 있도록 면책기준 대폭
완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9.5.14)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의 이행을
적극행정 면책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
-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각종 내부 운영규정(매뉴얼·
지침 등)을 감사시 위법·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 자제 등

② (운영절차 개선) 자체감사 면책신청기간 확대 등 면책제도 운영
절차 개선(규정안 제22조)

- 면책신청기간을 감사종료후 ‘7일 이내’에서 ‘감사결과가 통보되기 전’
으로 신청기간 확대 등

나. 공직자의 감사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

- 신청주체·대상, 처리절차, 면책효력 등 구체적인 운영체계 마련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7장 신설)

다. 근거법령 제·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 감사대상기관 정비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활동에 적용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10.7월 시행)을 목적조항에 명시(규정안 제1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6.9월)에 따라 '서민 금융진흥원(舊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규정안 제3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6.9월 시행) 및 「기술보증기금법」 개정('17.7월 시행)으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금융감독원) 및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검사권이 이전됨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에서 삭제(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2100-2791, 팩스 : 02-2100-2799, 이메일 : jhg78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